

2025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가.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 기간 내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 나.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한 재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1) 수급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을 한다.
 - 2) 수급자, 보호자와 서비스계약을 체결한다.

2. 계약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 가.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 다.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계약자 수급자(보호자) 의무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당해 연도 고시에 따른다.

나. 준수 사항

- 1) 방문요양 급여 범위 내 급여비용 - 급여 외 행위의 요구 금지
- 2) 장기요양급여 이용 수칙 준수 - 이용자가 병원에 입원 시 장기요양급여제공 중지 등
- 3) 기타 제공기관과 협의한 규칙 이행 - **급여 제공자에게 폭언 · 폭행 · 성희롱 · 괴롭힘 등의 인권 침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 월 이용료

※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이며 해당연도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단위 : 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구분	수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목욕	목욕 차량 이용 (차량 내 목욕)	목욕 차량 이용 (가정 내 목욕)	목욕 차량 미이용 시
	86,480	77,970	48,690

-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 2)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 와 (6%),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0%이다.
- 3) 이용부담금은 이용 시간별 수가를 산출하고 익월에 계좌이체로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4)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될 수 있다.
- 5)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발생하는 비급여 비용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통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되 전액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히 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며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가. 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③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나. 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계약의 해지 등 기타 사항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수급자의 해약통지나 수급자의 사망하면 계약은 종료된다.

- 나.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다. 서비스이용료가 3개월 이상 미납되어 연체하였을 때
- 라. 기관 내에서 기관 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 마.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바. 10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 사.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다정함 마음으로 어르신을 섬기는
효양재가복지센터